



보도시점

2026. 3. 11.(수) 11:00(잠정)

배포

2026. 3. 10.(화) 13:00

* 엠바고 변경 시 별도 문자 안내 예정

당정, ‘조합원 참여 선거제 개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농협 지배구조 개혁 본격 추진

- 3월 11일(수)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 개최
- 주요 내용
 - 조합원 참여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논의), 금품선거 시 처벌 강화 및 자진신고 활성화
 - ‘(가칭)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농식품부 지도·감독권 확대, 중앙회·조합의 경영·운영 정보공개 강화 및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객관성 강화 등
 - 중앙회장의 타 직위 겸직 금지, 회장 등 유죄선고 시 직무정지 신설 및 불법행위 고발 의무화, 중앙회·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 등
- 향후 계획
 - 국회·농업계·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협의 및 신속한 입법 추진
 -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의 역할을 다하도록 후속 개혁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1일(수)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국조실·금융위·금감원 등, 1.26~3.6)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주요 개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농협개혁 추진단(1.30~) : 명지대 원승연 교수·농식품부 김종구 차관(공동 추진단장), 협동조합·지배구조 등 관련 전문가 9명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현재 중앙회·조합 등에 한정)하고, 중앙회·조합 등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감독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둘째,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한다. 또한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의 인사 등 운영 사안에 대한 회원·조합원 공개를 강화하여 조합원과 회원 중심의 통제 체계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재량적 배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계획 수립 시,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비리·금권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합장(1,110명) 직선제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공개된 소수의 투표권자로부터 발생하는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조합원 (204만명)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개선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지방선거 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키로 하였다.

* 조합별로 조합장, 이·감사, 대의원, 조합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을 일정 규모로 구성 하여 선거인단 개인별 투표권 부여

이와 함께,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 및 금품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을 상향하면서,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을 확대하고,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정은 이번 농협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 하였으며, 당 차원에서는 개혁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는 한편, 정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에서 제안한 개혁안을 기반으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내부통제 전 과정(신고, 감찰·감사, 처리 등) 매뉴얼화, 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전자문서 생산 의무화, 계약 전담부서 설치 및 퇴직자 관련 업체와 계약 제한, 도농상생사업비 세부 운용방안 등 농식품부 감독규정(고시), 중앙회 정관 등 내부규정 차원의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개혁 추진단 원승연 단장(공동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1단계 개혁방안”이라고 밝히면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규모화 여건 조성, 여성이사 비율 확대, 상임이사 의무 도입기준 재검토 등) 등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개혁방안’도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 비위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농업인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1-1751)
		담당자	사무관	최영조 (044-201-1757)
			사무관	오현정 (044-201-1726)

I 현황 및 문제점

① (견제·통제) 중앙회장은 법상 대외활동 권한만 있음(비상임)에도 인사·자금·감사권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지적

- 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내부 임직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낮고, 내부감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 위원장(前 중앙회 임직원), 위원 2(前 조합장) 위원 2(외부기관 등)으로 구성

- 지주·자회사 비위문제 발생 시 중앙회의 ‘셀프 감사’에만 의존하는 상황(농식품부 감독권 부재)

※ (특별감사 지적사항) ▲ 중앙회장 금품수수 및 농협재단 사무총장 횡령 의혹, ▲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합·조합장 징계 요구 미이행(74건, '22~), ▲ 농협유통 특정 용역업체와 10년 간 수의계약 ▲ 농협네트웍스·생명 등 법상 권한의 부재로 농식품부 특별감사 대상에서 제외

② (운영 투명성) 중앙회 예산배분·자금집행 과정이 불명확하고, 인사*·경영 시스템 등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인사추천위원회(전무·상호대표(2), 사외이사(7), 감사위원(5), 조합감사위원장(1) 추천)의 실질적 운영을 중앙회 인사총무부가 전담하는 등 인사 독립성 부족

-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 '25: 16조원 → '26: 18)을 재량적으로 확대(공약 이행 등)하여 이를 통치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비판 多

※ (특별감사 지적사항) ▲ 인사추천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위원 관행적 추천 등), ▲ 무이자자금의 특정 조합 편중(이사조합 181억원, 일반조합 122), ▲ 총회 통제 받지 않는 예산 비율 60%, ▲ 회장 해외출장 숙박비 상한 초과 집행 및 업추비 미공개(법상 공개의무), ▲ 조합장 채용·인사 비위 의혹 등

③ (선거제도) 현 조합장 직선제(1,110명)는 조합원의 의사 반영에 한계(조합장 위주 공약* 등), 선거과정에서 금품선거 의혹 제기

* (現 회장 공약) 조합장 농정활동비(월 100만원), 연임제한 폐지, 연봉 하한제 등

-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되어 정책토론이 어렵고, 짧은 공소시효(6개월)와 現 처벌수준으로 금품선거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

*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식(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명함배부 등) 外 불가(토론회 등)

II 농협개혁 추진방향(안)

- ◆ 농협이 조합원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①강력한 내·외부 견제, ②투명성 확대 및 ③선거제도 개편 추진
 ▶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 회복을 위한 후속 논의 추진

추진과제	주요 내용
1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가칭 농협감사위원회) ▶ 농식품부 감독권 확대 및 중앙회 등 기관 주의·경고 신설 ▶ 주요 형벌유죄 선고시 임직원 직무정지 및 범죄행위 고발 의무화 ▶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임명 및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등
2 투명성 확대 및 조합원에 의한 통제	▶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및 공정한 운영절차 마련 ▶ 중앙회장 등 지주·자회사 경영개입 금지 및 타 직위 겸직금지 ▶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상임이사·농감위원장 추가 ▶ 경영·운영 등 회원(조합원) 정보공개 강화 및 농협 발전계획 수립
3 선거제 개편 및 금품선거 방지	▶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방안 마련 ▶ 정책토론회 등 선거운동 확대 추진 및 선거공영제 방식 적용 ▶ 금품선거 형사처벌·과태료 강화 및 선거범죄자 피선거권 제한 ▶ 자진신고 유인 확대 및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6개월 → 3년)

〈 농협개혁 추진단 후속 논의 〉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정체성 회복

- ▲ 경제사업 활성화(지주체계 평가, 도시조합 역할제고 포함), ▲ 조합 경쟁력 강화(규모화·건전성·품목조합 등), ▲ 조합 이사(여성·상임) 제도개선, ▲ 회원조합 지원방식(무이자자금, 지역 단위 편성권 등) 재검토, ▲ 퇴직자 재취업 제한, ▲ 선거범죄 과징금 신설 등

① (견제·통제)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농협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 중앙회 내부의 감사·조합감사 기능을 독립화(가칭 농협감사위원회)
 - 중앙회에 소속되지 않는 별도의 특수법인(합의제 기구*)으로 신설,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대상 사각지대 없는 감사기능 수행
- * 위원장 1(농식품부 제청·대통령 임명), 위원 6(농식품부 추천 1, 금융위 1, 변협 1, 회계사회 1, 중앙회 2), 피감기관인 중앙회·지주·자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운영
- 중앙회·경제지주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임명 및 독립성 강화
 - * 중앙회·자회사 근무 경력자는 제외 / 자료 제출 요구권 등 부여
- 농식품부 지도·감독권을 現 중앙회·조합에서 → 지주·자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중앙회·조합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근거 신설*
- * 시정명령, 업무정지, 자금지원·사업참여 제한, 임원 경영평가 감점, 조합장 등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조치와 연계
- 금품수수·횡령 등 유죄 선고(1심 포함) 시 중앙회 등 임직원 직무정지 근거 신설, 임직원 범죄(금품·채용·성 비위 등) 고발 의무화
- 이사(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책무성 명시, 조합장 이사 선출시기* 조정
- * (현재) 회장 선거 후 이사조합장 선출 → (개선) 이사조합장 선출 후 회장 선거

② (운영 투명성) 투명성 확대 및 조합원에 의한 통제체계 마련

- 중앙회장 등의 인사·경영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명문화 및 타 업무·직위 종사 금지(농민신문사 회장, 재단 이사장 등)
-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및 추천 기관 다양화(정부 등), 인추위 중심 운영절차 개편** 및 공개 강화(이사회 보고내용 확대 등)
- * (현행) 조합장 3명 + 농업인단체·학계 추천 4(특정 단체 중심)
→ (개선) 조합장 2+농식품부 1+금융위 1+단체 2(동일단체 연속추천 불가)+학계 1
- ** 후보자 공개모집, 복수 후보자 심사, 투명한 결과 보고 등 인추위 중심 인사체계 마련

-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상임이사(전무·상호대표), 농감위원장 추가
 - * (現 회장·감사위원장) →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비밀 이용 금지 등
- 중앙회·조합 경영(자금·인사 등)·보수 등 회원 공개 강화 및 1인 정보공개청구권(조합) 신설
 - * 공개 대상 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 예외 사유, 구제 절차 등 실효성 확보 장치 마련
 - 재무건전성 고려한 무이자자금 계획 수립 및 사전 보고의무 신설
- 조합·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신설) 수립·평가
 - * 중앙회-지역본부(도)-조합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③ (선거제도)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 및 금품선거 통제장치 강화

- (선출방식)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방안 마련(~3월)
 - ①조합원 직선제, ②선거인단제 등 제도별 장·단점 비교, 구체적 설계 운영방안 검토
 - * ①전체 조합원(204만명)이 직접 투표하여 회장 선출
 - ②조합장, 조합의 대의원·이·감사, 경제사업 이용조합원 중 일정 수를 추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투표권 부여, 최다득표자 회장 선출
- (금품선거 방지) 형사처벌·과태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6개월 → 3년) 함께, 자진신고자 처벌경감** 및 신고포상금 확대 추진
 - * ▲징역 3년/3천만원 이하 벌금 → 5/5, ▲제공가액 10~50배 → 30~80(상한액 5천만)
 - ** (현재) 금전·물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위탁선거법) → (확대)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면 감경·면제(공정거래법 사례)
 - 선거운동 방식을 확대(TV 토론회 등)하고, 공영제 방식의 비용 부담 (중앙회)으로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로 전환 유도

※ (후속검토 과제) ▲조합원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지주체계 평가 포함)
 ▲상임이사·감사 제도개선, 품목조합 활성화 및 규모화 등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
 ▲집행간부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선거범죄 과징금 신설 등

※ 논의경과

▶ '25.12.19 (상임위 의결) → '26.02.11 (법사위 의결) → '26.2.12 (본회의 의결) → '26.3.10 (공포)

- (중앙회)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성 강화,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내실화, 내부통제기준 실태점검·개선 의무화
 -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계획(사업별·조합별 지원규모 포함) 수립·회원공개, 평가·환류 의무화 등(농협법 제136조의2~5)
 - 인사추천위원회 후보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제125조의5)
 -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매년 1회 이상 의무화(제125조의4)
- (조합)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 조합 내부통제기준 설립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제48조)
 -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일원화(제45조)
 - 자산이 500억원 이상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자산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차등화(제65조의2제2항)
- (도시조합) 도시조합의 정의 신설 및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 부과, 도농상생지원자금 조성·운용 규정 마련 등
 - 신용매출이익의 3%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고, 경제사업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5%까지 추가 납부(제59조의2, 제142조제2항)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현행 2.5%이내→3) 상향(제159조의2제1항)